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동차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며,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98호, 2024. 2. 13. 공포, 2025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·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(公衆)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,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자동차의 운행 제한)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·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(公衆)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7조제1항제9호 중 “제3호까지”를 “제5호까지”로, “제2항제2호의2·제3호”를 “제2항제2호의3·제3호·제3호의2”로 한다.

별표 1의3 제2호가목 1)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호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74조제2항”을 “법 제74조제2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을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법 제31조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		
마.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	법 제74조 제3항제6호	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	10억 원

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경우		분의 2	
바.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4조 제2항제2호	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3	50억 원

별표 1의3 비고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비고의 제3호 중 “제2호가목”을 “제2호사목”으로 한다.

구분	계산식
제2호가목	매출액=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[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(이하 이 비고에서 “시정조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를 말한다]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
제2호다목	매출액=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
제2호라목	매출액=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로서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했을 때 판매되지 않았던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
제2호마목	매출액=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
제2호바목	매출액=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

별표 2 제2호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72조제2항”을 “법 제34조의6제1항, 제72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로목부터 드목까지를 각각 소목부터 브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로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로.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	법 제84조제2항제3호의2	500
--	----------------	-----

이트를 실시한 경우		
모.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84조제1항제4호	1,000
보. 법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84조제1항제5호	1,000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 중 “제2항제2호의3”을 개정하는 부분 및 별표 1의3 제2호가목 1)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17조(권한의 위임) ①국토교통 부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 다. 1. ~ 8의2. (생 략) 9.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같은 조 제1항제 1호부터 <u>제3호까지</u>,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·제3호,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·제14호· 제15호·제15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·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·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 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	<u>제5조(자동차의 운행 제한) 법 제</u> <u>25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법 제2조</u> <u>제4호의3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</u> <u>공격·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</u> <u>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(公</u> <u>衆)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</u> <u>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.</u> 제17조(권한의 위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 ----- <u>제5호까지</u>----- <u>제2항제2호의3·제3호·제3</u> <u>호의2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) 10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48